

재결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10일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	
	주소	전화번호		
손실현황	상대방	환경부 장관, 시·도지사		
	사업의 종류			
	손실발생사실			
	손실발생액과 그 내역			
	협의내역			

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5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토지수용위원회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